



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한 예규 등 법령해석 개선내용

(국세청, 1999. 4. 1)

◆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예규나 업무처리지침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

◆ 개선내용

- ① 맞벌이부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개선
- ②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 인정
- ③ 양도세를 적게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인정
- ④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세
- ⑤ 어음·수표 부도시 대손세액공제시기
- 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용기 및 운반용 상자의 동일 제조회사 공장간 상호 사용 허용


납세자
권익보호와
납세편의를 위한
예규 등
법령해석
개선내용


1.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개선

종 전	개 선
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모·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는 ○ 부부중 한 사람이 모두 적용받아야 하며 ○ 한 사람(남편)이 기본공제를 받고, 다른 사람(부인)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	○ 종전과 같이 부부중 한 사람이 모두 적용받거나 ○ 한 사람(남편)이 기본공제를 받고, 다른 사람(부인)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

<개선이유>

- 현재에는 맞벌이 부부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가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
-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

<사 례>

○ 남편은 자영업자(사업소득자)이고, 부인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방법

①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

[종 전]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하나,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



글 / 임 현 석 세무사

없어 결과적으로 특별공제는 적용안됨

[개 선] 기본공제는 남편이,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

② 부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

- 종전과 같이 부인이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음

<참 고>

- 기본공제:근로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소득,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모, 형제·자매,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
- 특별공제: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
 - 의료비 공제: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, 장애인·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공제
 - 보험료 공제: 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, 자동차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
 - 교육비 공제: 유치원 연 70만원, 초·중·고등학교 연 150만원, 대학 연 2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

2.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액 중 일부를 포기한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

□ 개인사업자나 회사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전액의 회수가 곤란함에 따라 채무자와 합의하여

- 채권중 일부는 회수하고
- 잔여액은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세무처리방법

종 전	개 선
○ 채권포기액은 <u>절대비로 보아 세법상 절대비 한도액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</u>	○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<u>아니하고</u>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<u>객관적으로</u> 정당할 경우에는 ○ 채권포기액을 <u>손금으로 인정</u>

<개선이유>

-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전액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므로
-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례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세무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임

<사 례>

-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10억원의 채권 중 6억원은 회수하고 4억원은 포기하는 경우

[증 전] 채권포기액 4억원은 절대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

[개 선] 채권포기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

<참 고> 절대비한도액:1200만원+수입금액의 일정비율

-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:1만분의 20
-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:2천만원+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
- 500억원 초과 :6천만원+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

➊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